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59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 강선우 • 박용갑 • 김윤덕

서미화・김한규・김 윤

박해철 • 추미애 • 홍기워

조승래 · 정을호 · 김교흥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11조의5제1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(2021헌가19, 2024. 6. 27.)한 바 있음.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기관이 「의료법」 등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지급보류처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, 현행법 해당 조항은 지급보류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입법적 규율이 전혀 없는 점, 처분 이후 무죄판결 확정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이 혐의를 벗어나더라도 지급보류기간 동안 발생 한 재산권 제한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등 보상에 대한 규율이 없는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성을 가지고 있음.

이에 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에 대한 취소 제도 및 취소 이후 보류된 급여비용 지급 시 「민법」에 따른 법정이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,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1조의5).

법률 제 호
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5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급 보류된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하고, 지급 보류된"으로 하며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, "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"을 "지급 절차 등"으로 한다.

-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 제2항 또는 「약사법」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이 경우 이자는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무죄판결 선고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 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이 법 시행일까지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

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1조의5(급여비용의 지급 보류) 제11조의5(급여비용의 지급 보류) ①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급여비 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2 항 또는 「약사법」 제20조제1 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 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의 지급을 보 류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의료 급여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 하는 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 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해당 <신 설> 의료급여기관이 「의료법」 제 33조제2항 또는 「약사법」 제 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에 대 하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 고된 경우 그 선고 이후 실시 한 의료급여에 한정하여 해당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「의료법」 제33조제2항 또는 「약사법」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이자를 가산하여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보류 절차 및 의견제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, 제3항에 따른 지급 보류된 급여비용 및 이자의 지급 절차와 이자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하는 급여
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<u>4</u>
<u>시장·군수·구</u>
청장은 지급 보류 처분을 취소
<u>하고, 지급 보류된</u>
경우 이자는 「민법」 제379조
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
계산한다.
<u>⑤</u>
제4항
<u>제4항</u>
<u>제4항</u> <u>지급 절차 등</u>